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호 6606 제출연월일: 2024. 12. 17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, 운영실적이 저조한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"를 "5년마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	제6조(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
수립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	수립 등) ①
관은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	<u>5년마다</u>
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	
<u>년마다</u>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	
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	
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	
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	
2. ~ 11. (생 략)	2. ~ 11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	③
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	
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의 수립	
절차를 준용하여 이를 변경할	
수 있다. <u>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</u>	<u><단서 삭제></u>
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	
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문화예	
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생	
략할 수 있다.	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8조(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	<u><삭 제></u>
설치 등) ①문화예술교육 지원	
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	

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.
-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정책방
 <u>향 설정</u>
- 2.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3. 문화예술교육 지원업무의 협 력·조정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 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,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서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지

명하는 사람이 된다.

- ⑤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교원 및 관련 학계 전문가, 문화예술 인,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 자,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 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・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렁으로 정한다.